| 산업통상자원부 | 보 도 자 료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보도 일시 | 2022. 12. 28.(수) 12:00 < 12.29.(목) 조간 > | 배포 일시 | 2022. 12. 28. (수) |
|---|---|---|---|
| 담당 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임형진 (044-203-5260) |
| | | 담당자 | 사무관 임성균 (044-203-5261) |

#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12.27. 국무회의)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지시했다.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 **최근 영하 10℃(체감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 (현행) 252.74억 원(연탄쿠폰 236억 원, 등유바우처 16.74억 원) + (확대) 54.9억 원(연탄쿠폰 37억 원, 등유바우처 17.9억 원) = 307.64억 원(연탄쿠폰 273억 원, 등유바우처 34.64억 원)

- **(연탄쿠폰 사용가구)**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37억 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등유바우처 사용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000 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총 17.9억 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내역 >**

| 구 분 | 지원가구(가구) | 가구당 지원금액(원) | | 증가액(원) | 증가율(%) |
|---|---|---|---|---|---|
| | | 당초 | 변경 | | |
| 연탄쿠폰 | 50,000 | 472,000 | 546,000 | 74,000 | 15.7 |
| 등유바우처 | 5,400 | 310,000 | 641,000 | 331,000 | 106.8 |

○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52.9억 원 규모).

* 8,526개소 × 30~100만 원(차등) × 2개월 = 52.9억 원

·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12.28)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대상 생활·이용시설 및 복지관 등

- **(쪽방 거주자)**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총 4억 원 규모).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2만 리터와 전기장판 1.2천 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요약)
2. 산업부 에너지 지원사업
3.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역

| | | | |
|---|---|---|---|
| 담당 부서<br><총괄> | 보건복지부<br>사회서비스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장은섭 (044-202-3210) |
| <복지시설> | 보건복지부<br>사회서비스자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혜래 (044-202-3250) |
| | | 담당자 | 사무관 정윤정 (044-202-3258) |
| <쪽방거주자> | 보건복지부<br>자립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권혜나 (044-202-3070) |
| | | 담당자 | 사무관 오경희 (044-202-3074) |
| <등유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br>자원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김호성 (044-203-5240) |
| | | 담당자 | 사무관 권정희 (044-203-5253) |
| <연탄쿠폰> | 산업통상자원부<br>석탄광물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임형진 (044-203-5260) |
| | | 담당자 | 사무관 임성균 (044-203-5261) |
| <복지시설> | 여성가족부<br>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유정미 (02-2100-6061) |
| | | 담당자 | 사무관 류효현 (02-2100-606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요약)**

| ■ | 연탄쿠폰 | 등유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 (쪽방)등유 | (쪽방)전기장판 |
|---|---|---|---|---|---|
| 지원내용 | 지원단가<br>**7.4만원**<br>추가 인상 | 지원단가<br>**33.1만원**<br>추가 인상 | 시설<br>**난방비**<br>추가지원 | 등유<br>**4.2만 리터**<br>지원 | 전기장판<br>**1.2천 매**<br>지원 |
| 대상규모 | 연탄쿠폰<br>사용<br>**5만 가구** | 등유바우처<br>사용<br>**5.4천 가구** | **8,526개소** | 쪽방거주자 **5.5천명** | |
| 소요예산 | **37억원** | **17.9억원** | **52.9억원**<br>(국비 26.7억원) | **0.6억원** | **3.4억원** |
| 재원확보 | '22년 실집행 잔액 활용<br>'23년 예비비 지원(필요시) | | 선집행 후<br>이·전용 등<br>예산 활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 |
| 소관 | **산업부** | | **복지부·여가부** | **복지부** | |
| 전달체계 | 광해광업공단<br>⇩<br>지자체<br>⇩<br>사용자 | 에너지공단<br>⇩<br>지자체<br>⇩<br>사용자 | 복지부·여가부<br>⇩<br>지자체<br>⇩<br>시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br>⇩<br>쪽방상담소<br>⇩<br>쪽방거주자 | |

**붙임2** **산업부 에너지 지원 사업**

| 구 분 |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1] | 등유바우처[2] | 연탄쿠폰[3] |
|---|---|---|---|
| **사업기간** | **2015년~계속** | **2012년~계속** | **2008년~계속** |
| **사업예산** | 2,034억 원 | 17억 원 | 236억 원 |
| **지원대상** |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한시) 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 中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 中 |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br>■ 기초생활수급자<br>■ 차상위계층(고정재산, 고소득 부양가족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계층)<br>■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 |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
| **대상가구** | 117.6만 가구 | 0.54만 가구 | 5만 가구 |
| **지원단가** | 평균 年 18.5만원<br>*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年 31만 원 | 年 47.2만 원 |

1)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로 포함되어 발표('13.5월)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5년부터 추진

2) '07년 고유가로 저소득층 등유사용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위해 민간 현물지원사업(정유업계 후원금, 1억원 미만)으로 출범(이후 '12년부터 정부지원(산업부)으로 추진)

3) '17년간 동결('89년~'05년)되어오던 연탄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동결 전 연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추진

**붙임3**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역**

## □ 지원대상

○ 국고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일부 이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소관법령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취약시설

## □ 지원방식

○ 1~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화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30만 원 / 51~100명 50만 원 / 100명 초과 100만 원
**(이용시설)** 일괄 30만 원

## □ 추가지원액 : 8,526개소 / 5,285백만원 (국고 2,668백만원)

**< 시설유형별 소요비용 (복지부) >**

(단위:백만 원)

| 구분 | | 시설유형 | | 시설수 | 2개월 지원액 | | 비 고 |
|---|---|---|---|---|---|---|---|
| | | | | | 총액 | 국고 | |
| 총계 | | | | 7,632 | 4,748 | 2,398 | |
| 사회복지시설 | 생활(7개) | 소계 | | 1,355 | 981 | 550 | |
| | | 노인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20 | 12 | 6 | |
| | | 아동 | 학대피해아동쉼터 | 115 | 69 | 28 | |
| | | | 공동생활가정 | 518 | 311 | 124 | |
| | |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 618 | 460 | 308 | |
| | |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 6 | 4 | 2 | |
| | |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19 | 11 | 6 | |
| | | | 정신요양시설 | 59 | 114 | 76 | |
| | 이용(5개) | 소계 | | 5,594 | 3,357 | 1,641 | |
| | | 아동 | 지역아동센터 | 4,180 | 2,508 | 1,204 | 균특회계 |
| | | | 다함께돌봄센터 | 1,052 | 631 | 303 | 균특회계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95 | 57 | 29 | |
| | | 장애인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7 | 10 | 4 | |
| | | 취약층 | 지역자활센터 | 250 | 150 | 101 | |
| 취약계층(7개) | | 소계 | | 683 | 410 | 207 | |
| | | 장애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8 | 11 | 5 | |
| | | | 보조기기센터 | 17 | 10 | 5 | |
| |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75 | 46 | 23 | |
| | | 아동 | 자립지원전담기관 | 17 | 10 | 7 | |
| | | 노인 | 치매안심센터 | 256 | 153 | 77 | 건강기금 |
| | | 정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55 | 33 | 17 | |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 245 | 147 | 73 | 건강기금 |

## < 시설유형별 소요비용 (여가부) >

(단위:백만 원)

| 구분 | 시설유형 | | 시설수 | 2개월 지원액 | | 비 고 (회계구분) |
|---|---|---|---|---|---|---|
| | | | | 총액 | 국비 | |
| 총계 | | | 894 | 536.4 | 269.7 | |
| 생활시설 | 소계 | | 346 | 207.6 | 104.9 | |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65 | 39.0 | 26 | 양성평등기금 |
|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33 | 19.8 | 13.9 | 양성평등기금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4 | 20.4 | 14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50 | 30 | 1.8 | 양성평등기금 |
| |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136 | 81.6 | 40.8 | 청소년육성기금 |
| | | 청소년자립지원관 | 11 | 6.6 | 3.3 | 청소년육성기금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7 | 10.2 | 5.1 | 청소년육성기금 |
| 이용시설 | 소계 | | 548 | 328.8 | 164.8 | |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 | 17 | 10.2 | 5.1 | 양성평등기금 |
| | | 가정폭력상담소 | 128 | 76.8 | 38.5 | 양성평등기금 |
|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9 | 5.4 | 2.7 | 양성평등기금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105 | 63 | 32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 31 | 18.6 | 11.5 | 양성평등기금 |
| | | 성매매피해자자활 지원센터 | 13 | 7.8 | 4.5 | 양성평등기금 |
| | | 성매매피해자대안 교육위탁기관 | 2 | 1.2 | 0.6 | 양성평등기금 |
| |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 | 210 | 126 | 60 | 양성평등기금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13 | 7.8 | 3.9 | 양성평등기금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 | 12 | 6 | 양성평등기금 |